

改正消防法解說 1

危 险 物 에 関 한 解 說

(貯藏·取扱設備 및 消防施設基準)

李 澄 然

國立警察大學附設
消防學校教學科長

~目 次~

1. 危險物의 定義와 種類
2. 危險物製造所 등의 区分
3. 施設基準
4. 消防施設

一 消防法에서 規制하고 있는 危險物은 非單 特殊 工場이나 施設만에 極限되지 않고 그 利用은 우리의 日用生活에서 까지 必須의인 物品으로 密接한 有関性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實로 範圍가 離大하여 多樣한 反面에 法令上 規制內容은 물론 危險物에 屬하는 物品의 化學的 性質조차 모를면서 자칫 危險性 있는 不安과 違法을 저지르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法令은 그 利用度와 規模에 따라 最善의 安全限界를 定하고 있는 것이다.

1. 危險物의 定義와 種類

가. 定義

消防法上 危險物이란 大統領令이 定하는 發火性 또는 引火性 物品을 말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즉 消防法令에서 定하는 危險物은 그 危險性의 對象(範圍)를 毒藥이나 劇藥과 같이 毒性에 둔것이 아니라 發火性·引火性에 두어 火災등 災害發生 위험을 防止하기 위한 特別 取扱物品인 것이다.

나. 種類

위험물의 種類는 消防法施行令 第11條第1項으로서 同施行令 別表2에 揭記한 物品으로 定하고 있다. 또한 同施行令第53條로서 甲種危險物과 乙種危險物로 区分하였고, 消防法第14條第1項 및 同施行令第52條로서 “品名마다 指定數量”을 定해서 그 指定數量이상의 위험물은 危險物의 貯藏所에 貯藏

을, 並 製造所, 貯藏所, 取扱所에서 取扱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의 製造所, 貯藏所, 取扱所에서 위험물을 取扱할 때에는 消防法 第18條 및 第19條 各項의 規定에 따라 “위험물取扱主任”을 選任해서 위험물 取扱에 관한 保安監督을 받도록 하였을 뿐만아니라 위험물 取扱主任의 參與 없이는 위험물 取扱을 못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参考〉

위험물取扱主任 免許의 종류 및 区分

①種類

甲種～(內務部 施行)～內務部長官 閰하
乙種～(市, 道 施行)～市道知事 閰하

②保安監督의 限界

甲種～1類～6類中 어느것이나
乙種～免許시험에 合格된 類

다, 危險物의 性質

(1) 共通的 性質

위험물의 性質은 크게 나누어

■ 그 自体가 發火하는 性質

■ 引火하는 性質

■ 發火 또는 引火를 促進시키는 性質

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위험물을 第1類로 부터 第6類까지 그一般性質이나 火災予防 및 消火方法에 있어서 서로 共通性에 따라 分類하고 있으나 包括的 共通性質은 火災의 發生위험과 拡大위험이 크다는 点이다. 즉 火災의 發生(發火, 引火) 위험 또한 燃燒速度가 큰데서 오는 拡大위험, 그리고 消火困難性이라 하겠다.

(2) 第1類위험물

* 性質

第1類위험물은一般的으로不燃性이지만 다른物質을酸化시킬수 있는強한酸化剤이다.反応성이豊富하고加熱이나打擊,衝擊,摩擦그리고 다른藥品과의接触등에依해서分解하여이 때에많은酸素를放出하여 다른可燃物의燃燒를돕는다.萬若이럴때에可燃物이混合하고있으면甚하게燃燒하여경우에따라서는爆發하는수도있다.

* 火災予防

第1類위험물의貯藏,取扱 및 運搬에 있어서는 먼저分解를일으키는條件을주어서는안됨으로加熱,衝擊,마찰을避하고分解를일으킬수있는藥品과의接触을하지않도록하는것이매우重要하다.또熱源과酸化되기쉬운物質로부터멀리하여換氣가잘되는찬곳(冷所)에貯藏하도록한다.

容器에들어있는것은容器의破損에주의하고위험물새나오지않도록주의할必要가있다.또이중에는潮解性인것도있으므로濕氣를막는데도소홀히하지말고密閉도록한다.또過酸物B는물과作用해서發熱하는性質을가지고있으므로그貯藏이나取扱에 있어서는물과의接触을피하지않으면안된다.따라서火災가일어났을때消火를考慮해서다른第1類위험물과함께같은室內에貯藏하지않도록해야한다.특히有機化合物의過酸化物(過酸化ベン젠등)은그자体가可燃物이며第5類의위험물과같은危険性을가지고있으므로주의를要한다.

* 消火方法

一般的으로第1類위험물의火災는위험물 자체의火災라는点에서보다다른可燃物의火災가第1類위험물의分解에依해서放出되는酸素로서燃燒를돕기때문에이로因해燃燒가極甚해지고그럴수록그熱에依한分解또한더욱甚해지는것이다.따라서消火에 있어서는먼저分解作用自身를中止시켜야하므로冷却시켜分解速度이하로낮추어주는同時에可燃物의燃燒도막어야한다.그러나分解는急速히일어남으로消火는매우어려워서大部分의경우는多量의물로서다른燃燒를막는것이常例이고前述한過酸化物B는禁水性을考慮해서消火를하는것이다.(第3類위험물의消火方法参照)

(3) 第2類위험물

* 性質

第2類의 위험물은比較的低温에서着火되는可燃性物質이고大端히燃燒速度가빠른固体이다.또有毒性인것,或은燃燒할때有毒ガス를發生하는것도있으므로消火에困難을겪는경우가많다.더욱이金属粉은물이나酸등과接触하면發熱하게된다.

* 火災予防

酸化剤와의접촉을避하고点火源기타高温체의接近 또는加熱을避해야한다.특히金属粉은그밖에酸,물,濕氣를피할必要도있다.또한容器의破損이나漏出防止에留意해야한다.

* 消火方法

金属粉外의것은注水(물)에依한冷却消火方法이有効하다.金属粉이燃燒할때에는물보다乾燥砂(膨脹蛭石등)에의한被覆消火를해야한다.이때에注水는急激히發生하는水蒸氣의pressure이나分解에의한水素發生등으로燃燒金属의飛散이나爆発을招來하여오히려燃燒範囲를넓힐위험이따르게되므로避하지않으면안된다.

(4) 第3類 危険物

第3類의 위험물은물과만나서發熱反應을일으키고또可燃性gas를發生해서燃燒하는것이많으므로禁水性物質이라고할수있다.生石灰는單只發熱만하나다른物質은可燃性gas를發生시켜서燃燒하여때에따라서는爆發하는경우도있다.또한대개의第3類의위험물은不燃性이고金属칼륨,金属나트륨은空氣中에서도燃燒하는可燃性物質이다.

* 火災予防

貯藏이나取扱에 있어서는容器의破損,부식을막고水分과의接触을防止해야한다.雨水가스며들게된다던가漏水,洪水등에对하여주의할것은勿論,얼음(氷)이나눈(雪)과의接触도避하도록管理하지않으면안된다.또多量으로貯藏하면火災時消火가곤란하므로部分저장과侵水防止에유의하면서保存하여야하고保護液中에저장하는경우에는위험물이保護液表面에노출하지않도록그리고保護液이새여나오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 消火方法

第3類의 위험물의 消火는 대단히 어렵고 現在適合한 消火設備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고 다만 火災의 初期에 乾燥砂로 덮는 室息消防가 適當하며 注水(물) 消火는 위험하다.

5. 第四類 危險物

(1) 一般性質

(가) 대단히 引火되기 쉽다. 第4類의 危險物은 引火点이 낮으며 引火点이 상온보다 낮은것도 있다.

즉 引火点이 상온보다 낮은액체는 그 액체의 온도는 상온에서 引火点보다 높은 液溫이므로 대단히 危險하다. 引火点이 상온보다 높은것도 取扱하는 場所가 常溫以上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며 또 액체 자체의 温度를 높여서 사용하는 境遇도 많으며 또 액체 자체의 温度를 높여서 使用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取扱함에 있어서 꼭 引火点이 높은 것은 安全하고 引火点이 낮은 것만이 危險하다 고는 할 수 없다.

그 自体의 引火点과 액온을 비교해서 또 点火源의 有無를 고려하여 危險性을 生覺할 필요가 있다.

(나) 蒸氣는 空氣보다 무겁다. 시안화수소 이외의 第4類의 危險物에서 發散하는 蒸氣는 어느 것이나 空氣보다 무거운 것이다.

따라서 낮은 곳이나 地面을 훌려서, 이외의 먼 곳까지 蒸氣가 흘러 내려가므로, 点火源이 가까이 없다고 安心할 수 없다. 이를 蒸氣는 특이한 냄새가 있는 것이 많지만, 서 있는 사람들의 코에는 극히 묽은 농도의 것만 맡을 수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危險한 농도의 蒸氣가 낮은곳에 고여 있는 줄을 모르는 境遇가 많이 있다.

(다) 약간의 蒸氣가 空氣와 혼합되어 있어도 燃燒한다. 燃燒範圍의 下限, 즉 燃燒시킬 수 있는 가장 稀薄한 증기와 空氣의 혼합비율은, 가연성가스의 경우보다 낮은 것이 많다. 가솔린의 경우 下限은 약 1%이다, 또 일반적으로 燃燒범위는 가연성가스의 경우보다 좁고, 가소린의 경우는 1~6%, 넓은 것이라도 2黃化炭素의 1~44%, 아세트 알데히드의 4~57%이다. 연소범위의 下限이 낮은 것, 또 燃燒범위가 넓은 것은 危險性이 크다는 것 이지마는, 이러한 것은 引火点과 비점을 함께 生覺할 必要가 있다.

引火点이 낮은 것은, 蒸氣가 새여 나왔을 때는 주위의 危險범위는 넓어지지마는, 용기에 담겨서 일정량이 밀폐(密閉) 되어 있는것 중에는 常溫에 있어서 연소범위의 上限以上의 濃度의 蒸氣가 充滿하여 있으므로 燃燒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연성액체가 약간 남아있는 듯한 밀폐용기 안에서는, 연소범위의 혼합가스가 되기 쉬우므로 危險하다.

(라) 着火温度가 낮은 것은 危險性이 크다. 引火点이란 点火源에 의해서 燃燒가 시작되는 最低의 液溫이지만, 着火温度는, 연소범위의 혼합가스가 点火源에 의하지 않고, 고온체의 접촉등에 의해 가열되어 스스로 発火하는 최저溫度를 말한다.

이 着火温度가 낮은 것은, 特히 注意가 必要하다. 이황화탄소의 着火温度는 100°C이며, 赤熱体가 아닌 것이라도 혼합가스를 이 정도의 温度까지 上승시킬 수 있는것이 있으므로,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 一般的으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렵다. 이황화탄소와 같이 물보다 무거운 것도 약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물보다 가볍다. 또 알코홀과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에 녹지 않는다. 따라서 第4類의 危險物의 대부분이 물 위에서 完全分離되어 뜨며, 물이 있는한 넓게 퍼지려 한다. 그러므로 引火하는 危險의 범위도 넓어지고, 또 火災發生時는 火面이 대단히 넓으므로,水面에서 液體流出은 極力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火災時에 多量의 물을 뿌리는 것은, 오히려 火面을 더 넓히는結果가 되므로, 이 点에 注意 해서 소화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2) 火災豫防

第4類의 危險物은, 引火性이므로 되도록 引火点以下로 温度를 낮추어야 한다. 용기의 파손, 누설을 防止하고 取扱中에도 액체나 가스의 漏出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꽃, 화기, 기타 고열체를 접근시키지 않는것도 必要하다. 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또 空氣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의 낮은 곳을 훌려 내린다. 따라서 이를 蒸氣를 높은 곳으로 배출시키거나, 혹은 충분한 通風을 시켜줄 必要가 있다.

事故時에는, 漏泄液體 表面積 누출 증기량 같은 것을 고려해서 引火, 発火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경

우는 漏泄을 최소한으로 할 措置를 대비하고, 引火 후의 조치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一般的으로 불꽃이나 고온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가지마는 静電氣의 發生에 대하여서는 生覺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석유류와 같이 電導性이 나쁜 액체에 있어서 취급할 때는, 액체의 흐름에 의한 마찰 등에 의해서 정전기가 發生하는 경우가 있으며 空氣가 건조한 계절이나 場所에서는 發生한 정전기가 放電하지 않은 채로 서서히 쌓여서, 불꽃을 뚫기고 点火源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서 정전기의 發生을 防止하지 않으면 안된다.

(3) 消火方法

可燃性液體의 消火는 空氣遮斷이 제일 좋은 수단이며, 다음이 燃燒物質의 除去다. 注水에 의한 냉각도 때에 따라서 효과를 거둘 때도 있지만, 引火点이 常溫보다 낮은 것은 사실상 引火点 이하로 냉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포소화제는 포가 액면에서 일정한 時間 동안 지속하여, 액면을 덮고 있으므로 잠시 消火剤의 방사가 중단된다 하드래도, 다음 수단에 의한 消火까지는 원상태로 돌아가서 火災를 확대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알코홀류와 같은 수용성인 것은 액면을 덮고 있는 포가 녹아서 소멸당하므로 특수한 안정제를 가한 알코홀포음 消火剤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6) 第5류 危險物

*性質

第5류의 危險物은 가연성 물질이며 또한 산소함유 물질이므로 자가연소 또는 내부연소를 이르기 쉬우며 연소속도도 극히 빨라서 폭발적이다. 유기의 질화물이므로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하든지 혹은 다른 약품과의 접촉에 의해서 폭발하는 것이 많다.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므로 점화원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산화반

응이 일어나 熱分解가 진행되어 자연발화를 이르키는 경우도 있다.

*火災豫防

저장에 있어서는 실온 습기 통풍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해야 한다. 또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을 피하여야 하며 기타 분해를 촉진시키는 원인을 없애는 등 관리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용기의 파손 구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운반용기 및 포장의 외부에 「화기엄금」 「충격주의」와 같은 표시를 한다.

*消火方法

제5류의 危險物의 연소는 폭발적이며 연소속도가 지극히 빠르므로 소량일 때나 火災의 初期 이외에는 소화가 대단히 곤난하다.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스스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질식효과의 소화방법은 효과가 없다. 따라서 많은 물로서 冷却消火를 하여야 한다.

소량의 위험물이든 火災의 초기에는 消火가 되지만 그 이상 火災가 진행하고 있을 때는 소화의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延焼를 막는 것 이외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小分해서 저장하는 것이 좋으며 용기의 파손 防止방지 등 관리에 주의를 요한다.

消火剤로서는 포소화제, 분말소화제, 불연성 가스소화제, 증발성 액체소화제가 쓰이며, 또 火災의 성격에 따라서 霧狀의 물을 뿜어서 發生 수증기에 의해서 空氣의 공급을 희박하게 하여 냉각시키는 것도 효과를 거둘 때가 있다.

증발성 액체소화제나 불연성 가스소화제가 부족하여 完全히 消火되기 前에 消火剤의 放射가 중지된다면 곧 본래 액면까지 火災가 다시 확대 하므로 危險物의 量에 따라서 消火剤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7) 第6류 危險物

*性質

제6류의 危險物은 자신은 불연성 물질이나 산

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제이다. 따라서 분해에 의해서 산소를 발생시켜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돋는다. 일반적으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며 심한 반응을 나타낸다. 유기물과 혼합하면 그것을 산화시켜 때에 따라서는 착화하여 유독한 가스를 발생시킨다. 또 제 6 류의 危險物은 부식 성인 강산이므로 피부나 衣類를 부식시키므로 취급시는 이점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火災豫防

가연물이나 분해를 촉진시키는 藥品類와의 접촉을 피하는 동시에 용기의 파손에 의해서 새여나와서 다른 물질과 접촉하거나 혼합하지 않도록 관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물과의 접촉에 의해서 発熱하므로 용기에 옮길때는 잘 밀봉하도록 한다.

* 消火方法

물과의 접촉에는 발열하므로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연소의 상황에 따라 안개 모양의 물을 주수했을 때는 좋은 효과를 거둘 때도 있다. 또 위급할 때에는 다량의 물로 橋釋시켜서 흘러버리게 하는 수도 있다.

그외는 모래나 탄산가스에 의한다. 산염화 탄소는 산화되어 맹독한 포스겐을 발생하므로 지하실이나 창이 없어 통풍이나 환기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新刊案内

改正消防法解説

著者 李 汐 然
李 英 得

〈解説冊子 内容〉

- 消防法의 逐條解説
- 法令의 總整理 (附錄)와 관련 法規 對照등 풀이。

● 菊版洋裝 500面

臨時定価 ₩ 1,900